

<적용 예외>

◆ 적용기간(9.6.~10.3.) 중 사적 모임(가족 모임 포함)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(9명 이상 불가)

◆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

○ (사적 모임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
•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
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■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■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

③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

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

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 풋살 최대 15명) 초과 금지